

2024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2.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보험 가입·유지를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 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개요
 - (지원내용)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30~50% 지원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범위) 2023년 7월 ~ 2024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 (지원금 상한액, 1인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6,350원,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각 27,820원

2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 ① (요건)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 ②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산정일기준유효자)
 - ③ (표준계약)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 ※ 지원제한 대상 6~7쪽 참조

3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상별 지원내용	
		프리랜서 예술인 (지역, 임의가입자)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표준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납부 보험료 50% 지원	납부 보험료 30% 지원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3개월 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납부 보험료 50% 지원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중 택1 이수, 10~11쪽 참조

□ 지원금 상한액 (1인 1개월 기준)

구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보험가입형태	지역임의가입	사업장가입	
표준계약 체결 시	월 46,350원	근로자인 예술인, 사업주 각 27,820원 (월 55,64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월 46,350원	미해당	
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지원	'24년 최저임금 월 2,060,740원 기준 납부보험료 30% 지원	

□ 지원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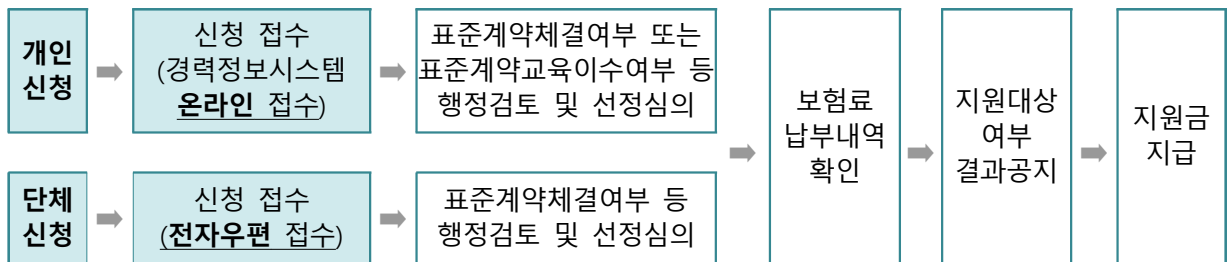
- 보험료 지원범위 : 2023년 7월 ~ 2024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체결 시' 계약 및 보수 지급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 (단기계약)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계약 시작 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장기계약)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지원기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택1) 시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 교육이수 상세내용 10~11쪽 참조
 - 표준계약 체결 지원기간 제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한해 지원

4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지원기준

-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 지원절차



*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2~4개월 소요(행정절차 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사후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
 -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보험료 납부 후 분기별 납부서류 추가 제출

□ 지급일정

구분	신청시기	지급시기
1차 지급	'24년 2월 ~ 3월 말 신청 시	'24년 5월 중 지급
2차 지급	'24년 4월 ~ 6월 말 신청 시	'24년 8월 중 지급
3차 지급	'24년 7월 ~ 8월 말 신청 시	'24년 12월 중 지급

※ 접수인원 및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4년 8월 31일(토) 오후 11시 59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 지원결과 안내 : 신청자 개별 공지 (단체 신청 시 신청 담당자 이메일로 공지)

6 제출서류

□ 예술인 개인신청

구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공통서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유형 전체' 선택하여 발급)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표준계약(교육) 확인서류	③ 표준계약서(서면계약) ④ 계약이행 확인자료 - 계약서 명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 언론기사 등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⑤ 표준계약 교육 이수증(교육참석확인증) * 해당자만 제출	③ 표준(근로)계약서 ④ 월별 급여명세서
보험료 환급	⑥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단체신청

구분	사업자 준비서류	예술인 준비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서식2)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소속 예술인 명단(엑셀서식2-1)	③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서식2) - 신청 예술인 개별 작성, 자필서명 필수 ④ 개별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⑤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서)(서식3) ※ 예술활동증명(특례신청)은 온라인 신청
표준계약 확인서류	⑥ 표준(근로)계약서 ⑦ 월별 급여명세서	-
보험서류	⑧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
보험료 환급	⑨ 사업자등록증 ⑩ 사업자 통장사본	⑪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계약서 상 업무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요청자료 미제출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음

7 지원제한 대상

- 소득 제한 : 연소득 43백만 원 이상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됨
 - 소득금액 증명원 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함
-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광고, 인력파견업 등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 프리랜서 장기계약 지원 제한
 - *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

월 지원(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 **보험가입 형태 관련**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예시) 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으로 신청을 했으나 사업장 가입자(타 업종 근로자 등)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 단, 문화예술단체 대표가 개인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가능
-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 **사업장(회사) 제한**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해당
 - 위 사업장 소속 예술인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문화예술사업자 미지원

- (개인신청자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윈도우(Window)운영체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상호 날인된 계약서 전체문서(1쪽부터 끝쪽까지)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정보, 계약당사자 양쪽 직인/날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PDF 또는 사진/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셔야 하며 한글, 워드, 엑셀 등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예술활동증명 온라인 신청(www.kawfartist.kr)
- (서류보완)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 여부,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전문심의) 전문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 **사회보험 제도란**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상해, 폐질, 실업, 분만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험제도입니다.
-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위의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을** 지원 합니다.

* 산재 및 고용보험은 별도 『예술인 산재보험』 및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사업으로 운영

○ **표준계약서란**

-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하여 보급 중인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재단 누리집 표준계약서 양식 www.kawf.kr/welfare/sub03.do)

- ‘표준계약서’에는 5개 항목을 필수요건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적정히 수정·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표준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1. 계약 당사자(필수)
2. 계약 기간(필수)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필수)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필수)
6. 계약 금액(필수)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 표준계약 관련 교육 이수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① 표준계약 교육(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운영)을 이수한 프리랜서 예술인 ②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신청일 기준 유효자) ③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 *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 예술활동증명(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을 재신청하여 완료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교육(택1) 이수 시 최대 3개월 보험료 지원
교육수강 인정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8월 사이에 신청 및 수강한 교육 - 교육수강 후 수료증(교육참석확인증) 발급
표준계약 관련 교육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운영 - 온라인 교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교육 누리집(kawf.edukocca.or.kr)에서 수강신청 후 수강 * 2024년 2월 16일부터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교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별도 공고
교육수강 후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 교육수료증(교육참석확인증) 및 보험료 환급용 통장사본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교육수강매뉴얼 참조

○ 온라인 교육 안내 (동영상 강의)

교육명	1. 예술 계약의 이해(상) 2. 예술 계약의 이해(하) 3.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개 교육 중 택 1하여 해당 강의 내 모든 차시의 강의 수강 후 수료증 제출
수강방법	▶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kawf.edukocca.or.kr) 접속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개인) ▶ 강좌 신청 ▶ 수강, 설문조사 ▶ 수료증 발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교육 누리집 주소: kawf.edukocca.or.kr
교육수강 인정기간	· 수료증 내 이수기간이 2023년 7월 ~ 2024년 8월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증 발급	- 강의 내 차시 모두 수강 후 설문조사 완료 시 수료증 출력 가능. 사업 신청 시 첨부 ※ '24년도 교육수강 및 수료증 발급은 2024년 11월 30일 23:59까지 가능하오니,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신규 발급 불가)

○ 오프라인 교육 안내 ※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

교육명	정기교육	수시교육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
교육내용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등 법률·현장전문가의 교육	신청 단체 수강자의 예술분야, 연령, 교육 형태(대면/비대면) 등 특성에 따른 법률·현장전문가의 맞춤형 교육
수강방법	개최 시기에 맞추어 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연 2회 정기 개최 (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 예정)	▶ 재단 누리집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 제출 ▶ 일정 협의 ▶ 단체 수강 ※ 20인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수시 신청 가능(개인 신청 불가)
인정범위	정기교육과 수시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 수강 - 교육을 여러 번 수강해도 1건만 인정	
증빙서류	교육참석확인증(수료증) - 교육 담당부서에서 발급받아 사업신청 시 첨부	

○ 문의처

- 온·오프라인 교육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